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어촌지역 역량강화 등 시책 마련 대상에 청년 추가〉
■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20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농어촌지역 역량강화 등 시책 마련 대상에 청년 추가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천호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9. 24.

3. 회 부 일 : 2024. 9.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바, 법 제정 취지에 맞추어 농어촌 청년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Ⅲ. 검토의견

1. 농어촌지역 역량강화 등 시책 마련 대상에 청년을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농어촌 지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어촌 지역 아동·청소년의 역량강화,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개정안은 동 조문에 따른 지원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농어촌 지역 아동· <u>청소년</u> 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u>아동과 청소년</u> 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농어촌 지역 아동· <u>청소년·청년</u> 에 대한 지원) ----- ---- <u>아동·청소년·청년</u> ----- -----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어촌 청년에 대한 역량 강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임.

다만, 청년의 연령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청년 지원정책의 대상이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 제21대 국회 심사경과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제2118401호)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고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2023. 03. 16.)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됨.

라. 검토의견

최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 2. 4.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음.

이후 같은 「청년기본법」 제정 취지에 맞추어 농어촌 지역 청년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20. 5. 19. 제정, '21. 5. 20. 시행),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3. 10. 24. 개정·시행) 등 에도 청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음.

※ 관련규정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20.5.19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3.10. 24. 개정)

제37조(농촌 여성·청년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여성·청년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 여성·청년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촌 여성·청년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인력·기술·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농어촌지역 청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

최근 5년간 전체 농촌인구 대비 농촌청년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청년층을 20대~40대로 상정하는 경우와, 20대~50대로 상정하는 경우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농촌인구 대비 농촌청년인구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농촌인구(읍·면)		9,756,098	9,763,833	9,718,290	9,605,378	9,667,471
농촌 청년인구	20-40대	3,676,432	3,592,738	3,487,528	3,378,854	3,374,711
	20-50대	5,292,765	5,206,443	5,081,850	4,951,102	4,954,712
농촌 청년비율	20-40대	37.7%	36.8%	35.9%	35.2%	34.9%
	20-50대	54.3%	53.3%	52.3%	51.5%	51.3%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4. 10. 28. 제출

이에 대응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등 농촌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다음과 같이 실시 중에 있음('24 예산 기준 1조 4,937억원).

동 사업의 적용 대상인 청년 농업인은 대체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유입·정착 사업 지원 현황】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연령	'24	'25(안)	
합계				1,483,718	1,482,136	
준비 (교육)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청년 대상 실습 위주 장기교육을 제공(18~39세)	18~39	8,000	8,000	
	청년귀농 장기교육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의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위한 실습 중심 장기체류형 교육(39세 이하 귀농 예정자)	~39	1,547	1,547	
	영농창업 특성화대학	○예비농업인 대상 현장 중심 직업교육 지원 * 농대생(연암·충남·전북·전남·경북대)	농대생	5,683	6,083	
	농업계대학 지원	○농대생 직업역량 강화 및 융복합 교육 * 농대생(강원·공주·순천대 등 15개교)	농대생	2,389	2,389	
진입 · 정착	소 득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및 교육(18~39세 독립영농경력 3년 이하)	18~39	95,724	113,662
	기 반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고령·은퇴·이농 및 비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 하여 청년농 등에 장기임대(18~39세 우선 지원)	18~39	1,070,000	962,500
		선임대후매도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희망 농지를 매입, 최장 30년 임대 후 매도(18~39세)	18~39	17,120	19,250
		농지매매	○비농업인 및 은퇴농 등의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 입하여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18~39세 우선 지원)	18~39	74,060	95,300
		임차임대	○고령·은퇴농 등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이 장기 임차하 여 청년농 등에게 장기 임대(18~39세 우선 지원)	18~39	49,500	17,820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청년농의 농업·농촌 진입 확대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 한 임대온실 지원(18~39세)	18~39	37,000	40,600
	자 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해 농업인 및 예정자 대상 자금 지원(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이하)	18~50	68,870	87,143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	○스마트팜 시설 설치(또는 운영자금)를 희망하는 일반 및 청년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 지원(39세 이하)	~40	7,494	7,897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연령	'24	'25(안)
성 장	주 거	청년농촌 보금자리조성	○보육 편의시설이 포함된 주거시설 임대 * 39세 이하(귀농 청년 등) 우선 지원	19~39	15,200	30,800
	자 금	청년기업 성장펀드	○청년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전용 투자펀드(49세 이하)	18~39	33,600	33,600
	교 육	청년농CEO 양성과정 운영	○농업마이스터대학과 연계한 체계적인 품목기술 및 창 업교육 운영(39세 이하 창업 초기 청년농)	18~49	5,125	5,125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 청년농을 대상으로 기술전수 및 진단을 통한 안정적 영농 정착 지원 및 적정 투자 유도 * 19~49세(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	~39	360	420
		멘토링 및 학습공동체	○선도농을 활용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및 농업인 간 문제해결형 자기주도 학습조직 지원 * 후계농, 예비농(농고·농대생) 등	19~49	965	-
		2040 스텝업 기술교육	○첨단 재배기술과 ICT 역량을 가진 전문 경영인으로의 성장을 위한 품목별 전문교육 * 20~49세(품목경력 2년 이상 등) 중심	나이 무관	1,081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4. 10. 28. 제출

개정안은 청년층이 급감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지원대상에 청년을 명확하게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청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면서 청년의 연령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및 조례의 경우 청년으로 인정되는 연령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음.

【각 규정별 청년 연령 비교】

법령/정책		연령	법령/정책	연령
청년기본법		19세~34세	조세 특례 제한법	창업 시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대통령령 위임		청년창업중소기업
	시행령	40세 미만		청년상시근로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농어업인법을 따르도록 규정, 40세 미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시행령	원칙: 15세~29세 공공기관·지방공기업 : 15세~34세		청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지방세 특례 제한법	창업 시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시행령 (청년상인)	39세 이하		청년근로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15세~34세		청년상시근로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시)
	시행령 (청년창업자)	39세 이하		15세~29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고용보험법 시행령 (청년실업자)		15세~34세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통계청(청년실업률)		15세~29세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4. 10. 28. 제출

【광역시·지방자치단체 조례별 청년의 범위】

지역	연령	관련 조례	지역	연령	관련 조례
서울	15세~34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강원	18세~34세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부산	18세~34세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충북	15세~39세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대구	19세~39세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충남	18세~34세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인천	19세~39세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북	18세~39세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
광주	19세~39세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전남	18세~39세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대전	19세~39세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경북	15세~39세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울산	15세~34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경남	19세~34세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세종	15세~34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주	19세~34세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경기	15세~34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참고: 거창군의 경우 19세~45세, 함양군의 경우 18~49세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4. 10. 28. 제출

현행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일반적 정책 방향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농업·농촌 정책의 정책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에 대하여 그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연령의 범위에 대하여는 농촌환경, 농촌인구구조 및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연령기준을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 보다는 광범위하게 청년으로 규정하되, 농업·농촌 정책별 성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청년의 대상을 정하고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상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개정안은 청년에 대한 지원을 현행 제17조의2(농어촌 지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추가하고 있는데, 해당 조는 ‘역량강화’ 및 ‘여가문화 정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청년 지원 정책으로 추진중인 다양한 사업을 포괄하기에는 협소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농촌 청년에 대한 지원’을 별도의 조문 또는 별도의 항으로 구성으로 구성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사례를 참고하여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착지원, 귀농지원, 창업지원, 일자리지원, 교육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조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 5.(생략)

② (생략)

문 의 처

02)6788-5417